# 『시<u>프트( ŚHift</u> )』 입주자 모집

(잔 여 공 가)

『**ŚHift**》(장기전세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주거중심의 주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서울시와 SH공사의 주택정책 일환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 1. 공급현황

	rl.	rl.	세대별 계약면적(m')						77	
지구명	단 지	신청 유형	공급호수		공급면적		기타	지 하		구조
1   0	명	ਜੋ ਲੈ	0 4 22 1	전용	주거 공용	계	기타 공 <del>용</del>	주차장	합계	난방
은평1		전용59 m²	55	59.800	20.515	80.315	4.204	34.979	119.498	
근병I		전용84 m²	15	84.980	40.066	125.046	10.117	62.077	197.240	철근콘크 리트벽식
발산	2	전용59 m²	24	59.760	17.264	77.024	1.813	21.615	100.452	지역난방
달化 	3	전용84 m²	24	84.530	24.383	108.913	2.731	32.879	144.523	
장지	4	전용59 m²	5	59.670	17.605	77.275	5.987	21.924	105.186	철근콘크 리트벽식
장시	10	전용59㎡	4	59.950	22.189	82.139	4.307	29.264	115.440	개별난방

,_ ,	단지명	시청	전세금액(천원)		원)		건물 최고 충수	이주	., .,
지구명		신청 유형	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해 당 동(호)		입주 예정	위 치
ं जी 1		전용59㎡	97,990	19,598	78,392	604동, 606동, 608동, 615동, 621동, 622동, 629동, 701동, 702동, 708동, 709동, 714동, 801동, 808동, 810동, 811동, 820동	7층~		은평구 진관내· 외동
은평1 -		전용84 m²	126,300	25,260	101,040	601동(411,710), 622동(504), 629동 (509), 701동(203,322,421,706), 702동 (313,421), 708동(615), 709동(604), 713동(102,402), 714동(112)	06), 702동 )9동(604),	'09.1	
발산 발산	2	전용59 m²	80,800	16,160	64,640	202동, 204동, 205동, 207동, 208동	15층		강서구
린 년	3	전용84 m²	130,330	26,066	104,264	302동 ~ 305동	15층		외발산동
장지	4	전용59 m²	111,090	22,218	88,872	402동(502), 403동(101,102,501,903,)	9층		송파구
0/1	10	전용59 m²	105,450	21,090	84,360	1009동(106,301,406,804)	17층		장지동

○ 은평1지구 전용59㎡는 59A, 59B, 59C, 59D, C59A, C59B, C59B1, C59C, NC59A, NC59B, NC59C, 복59-39A, NC59D, NC59D1, NC59F, NC59F1, NC59F2, 복59-39A, 복59-39A1, 복59-39A2, 복59-39A3, 복59-39C, 복59A-39A, 복59A-39A1, 복59-49B, 복59-49B, 복59-49B, 복59-49B, 본59-49B1, 은평1지구 전용84㎡는 84A, C84A, C84A1, C84B, NC84A, NC84B, NC84C, NC84D, NC84D1, NC84E, NC84F, NC84F1, NC84F2, NC84G, NC84H, NC84M, NC84N, NC84J, NC84C, 복84-59A, 복84-59B, 복84-59C, 복84-59D, 복84NCB, 복84NCC,

발산2단지 전용59㎡는 59A, 59B, 59C, 발산3단지 전용84㎡는 84D, 84E, 84F, 84F",

장지4단지 전용59㎡는 59A1, 59C, 장지10단지 전용59㎡는 59A, 59B, 59T의 유형이 있으며 유형별 전세금액은 동일함

(위 주택의 은평1지구 전용59㎡ 면적은 NC59A형, 전용84㎡ 면적은 NC84A형, 발산2단지 전용59㎡ 면적은 59A형, 발산3단지 전용84㎡ 면적은 84F형, 장지4단지 전용59㎡ 면적은 59A1, 장지10단지 전용59㎡ 면적은 59A형 기준임)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임
- 위 주택의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함
- 공급주택은 **신규 단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당첨자의 미계약 등으로 남은 주택으로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 배치된 단지임

# 2. 신청자격

### ■ 전용 59m²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10.6)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①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 어머니 ③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월평균소득 2,572,800원 이하 (단, 4인이상 세대의 경우 2,818,440원 이하)  ※ 월평균소득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4인이상 세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이 4인이상인 세대를 의미함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토	지	<ul><li>※ 지적법 제5조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li></ul>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 이하(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자동	F차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사용 자동차는 제외함

### ■ 전용84m²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10.6)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 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3. 입주자 선정

###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② 2순위: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음.

# 4. 신청접수일정

구 분	접 수 일 정	대 상 자	신청장소	
	2008.10.13(09:00) ~ 10.15(17:00)	1순위자	이미네하아	
인터넷청약자	2008.10.16(09:00 ~ 17:00)	2순위자	인터넷청약 (www.shift.or.kr)	
	2008.10.17(09:00 ~ 17:00)	3순위자	( w w w.Silitt.or.ki )	
	2008.10.13 ~ 10.15(09:00 ~ 17:00)	1순위자		
방문접수자	2008.10.16(09:00 ~ 17:00)	2순위자	SH공사 1층 로비	
	2008.10.17(09:00 ~ 17:00)	3순위자		

- 선순위 신청자수가 공급세대의 13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
- 1순위자 접수결과는 2008.10.16 09:00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함

# 5.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50세이상	40세이상 5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② 부양가족수	3인이상	2인	1인		
③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민법상 만20세 미만 자녀의 수 ('88.10.7이후 출생자)	3자녀이상	2자녀	_		
⑤ 만65세 이상('43.10.6이전)의 직7 경우 : <b>3점</b>	계존속(배우자의	의 직계존속 포함)을 1	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⑥「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b>3점</b>					
⑦「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b>3점</b>					
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 가	입자 : <b>3점</b>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⑤ 부양가족이 많은 자	자 로서 저축총액		금을 60회 이상		
	① 세대주 나이 ② 부양가족수 ③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④ 민법상 만20세 미만 자녀의 수 ('88.10.7이후 출생자) ⑤ 만65세 이상('43.10.6이전)의 직경우: 3점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근로자(임원제외): 3점 ⑦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현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지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 각 산위회수보다 - 각	① 세대주 나이 50세이상 ② 부양가족수 3인이상 ③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5년이상 ④ 민법상 만20세 미만 자녀의 수 ('88.10.7이후 출생자) ⑤ 만65세 이상('43.10.6이전)의 직계존속(배우자 경우: 3점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근로자(임원제외): 3점 ⑦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03 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조8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그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12회이상 추는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6회이상 추는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6회이상 추는 의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 가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의 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① 세대주 나이 50세이상 40세이상 50세미만 ② 부양가족수 3인이상 2인 ③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④ 민법상 만20세 미만 자녀의 수 (*88.10.7이후 출생자) ⑤ 만65세 이상(*43.10.6이전)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경우: 3점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3근로자(임원제외): 3점 ⑦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든 ⑧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12회이상 추가 납부한 자: 2점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6회이상 추가 납부한 자: 1점 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 가입자: 3점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횟수가 많은 자		

- ※ 부양가족은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 [만20세 미만('88.10.7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 이상('48.10.6이전)인 자에 한함] 를 말함
-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6. 신청 안내

- ※ 아래 서류 이외에는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시 제출하오니, 신청자는 계약시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신청 서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기재하신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만일 계약 체결 시 에 제출 서류와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자격요건(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토지, 자동차),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수, 배우자 유무, 서울시거주기간, 자녀수, 노부모부양여부, 청약납 입인정횟수 등] 당첨 취소 등 부적격당첨자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 ■ 방문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 자녀가 2인이상인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만65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직계존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장기전세주택 공급신청서(공사 소정양식)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 (청약저축 1,2순위자의 경우만 해당은행에서 발급)
- 신분증 및 도장
- ※ 제3자 신청시(본인, 직계가족 및 배우자 이외에는 대리 신청으로 간주)
  -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신청시 : 대리신청인(신분증 및 도장), 신청인(도장 및 주민등록등본1통)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제3자 신청시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인의 인감증명서1통 및 인감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 ■ 인터넷 신청안내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며, 계약 체결시에 제출 서류와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다른 경우[자격요건(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토지, 자동차),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수, 배우자 유무, 서울시거주기간, 자녀수, 노부모부양여부, 청약납입인정횟수 등] 당첨 취소되오니 신문공고나 공사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해당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하여 불이익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월평균소득은 반드시 2007년도 소득금액증명서(관할세무서 발급) 등 해당서류를 발급받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SH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shift.or.kr) 에서 회원가입 후, 해당 접수일에 공인인증서 및 청약납입인증 횟수 등을 확인하고 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신청순서 : SH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shift.or.kr)에 접속 → 회원 로그인 → 인터넷 청약에서 해당 아파트 선택 → 무주택서약서 체크 → 청약신청서 작성 → 작성 청약서 최종확인 → 공인인증서 인증 확인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납입인정회차 조회방법

- 청약저축가입은행(국민, 우리, 농협) 방문 → 주택공급신청서 발급 → 납입인정회차 확인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만 해당]

국민은행 홈페이지접속(www.kbstar.com) → 부동산에서 인터넷청약선택 → 청약통장순위조회 → 조회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 조회기준일입력(입주자모집공고일) → 조회선택 → 납입인정회차 확인

※ 청약납입인정회수는 통장에 표기된 회차기준이 아닌 주택공급신청서상 회차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 ○ 신청시간

인터넷 신청시간은 신청접수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함.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시 최종확인 완료 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해당순위 신청마감 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추첨 합니다.
- 각 단지별로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20%이상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함(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발표일부터 6개월까지임)

### ■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 2008.11.24(월)

SH공사 시프트 홈페이지(http://www.shift.or.kr) 및 SH공사 게시판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 자는 당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8. 계약일시 및 구비서류

■ 계약장소 : SH공사 1층 장기전세팀

■ 계약일시 : 2008.12.15(월) ~ 12.17(수) 09:00 ~ 17:00

### ■ 구비서류

- ① 계약금납부영수증 ② 인감증명서 1통 ③ 인감도장 ④ 신분증
- ⑤ 건강(의료)보험증 사본(원본지참):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전용 59㎡만 해당)
- \*\*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두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에 분리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사본을 모두 제출
- ⑥ 소득입증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전용 59㎡만 해당 계약일 기준 직전년도 서류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0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07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해당직장 ·세무서
근로자	2008년 신규취업자	·'08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08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해당직장
기 어 어 기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07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л I I л
자영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 자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무직자, 일	· - - - - - - - - - - - - - - - - -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계약장소

※ 소득 입증의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가점대상자 준비서류(전용 59m' 해당자에 한함)

가 점 대 상 자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중소 <b>제조업체</b>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	해당직장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이행상황신고서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1번이경 선절은도사되작중세공시를 표구받는 사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신설근도사 등세외

- ⑧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청약자만 해당)
  - 미성년 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만65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
-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9.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급주택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전용59㎡의 경우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거 전세금액의 할증 또는 퇴 거시킬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1세대(본인+배우자+세대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주택을 인터넷과 방문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되고,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소유여부 및 자산보유기준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 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 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 됩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발코니샷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수시로 샷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전용 59㎡만 해당)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10. 임대 문의

- 대표전화·인터넷청약관련 문의 : 1600-3456(시프트콜센타), 02-3410-7448~7454
- 당첨확인 : SH공사 시프트 홈페이지(http://www.shift.or.kr) 및 SH공사 게시판
  - \* 유선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1. 견본주택 공개

※ 견본주택 운영 시는 주차공간이 협소 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은 평 1 지 구	발 산 지 구
위치	은평구 진관내·외동 은평도시개발지구내	강서구 내외발산동 발산택지개발지구내
교통편	구파발역(3호선)①번 출구 버스(7723, 7733, 704, 8772번)승차 아파트앞 하차	발산역(5호선)⑦번 출구, 우장산역(5호선)④번 출구 마을버스(6655번)승차 아파트앞 하차
기 간	2008.10.11(토) ~ 10.12(일) 10:00~17:00	2008.10.11(토) ~ 10.12(일) 10:00~17:00
문의전화	마포통합센타(376-4126, 4128)	2단지(2663-2008), 3단지(2667-3114~5)
약도	장롱천 은평1지구 고파발역 기까촌입구 말연119 ● 은평경찰서 연신내역	● 송쟁역 발산역 명덕외국어고교 ● 발산지구 미프메디병원 ● 우장산역 E마트 ●

구 분	장지지구
위 치	송파구 장지동 장지택지개발지구내
교통편	장지역(8호선)②번 출구
기 간	2008.10.11(토) ~ 10.12(일) 10:00~17:00
문의전화	10단지(404-4556)
약 도	ックストルストルストルストルストルストルストルストルストルストルストルストルストルス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잇는 주택으로서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6.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직계존속 부양으로 인한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제외)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08. 10. 6.

\$H SH공사 사장